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7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8. 11.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95. 12. 6)됨에 따라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관계법령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함(안 제1조, 제7조)

○ 수방단의 임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하게 임무 부여(안 제3조)

○ 수방단 교육 및 훈련실시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 수방단 소집과 관련한 기록의 보존 근거(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방단 대상은? ○ 수방단이란? ○ 수방단에 강제가입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 교육실시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이 대상이 됩니다. ○ 수해나 자연재해의 경우에 각 동별로 평상시에 수방단을 구성해 놓고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 본인의 동의를 얻고 수방단에 편성되면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교육기간이 연장되어 개정되었으며, 입법취지는 자연재해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교육을 실시하여 대비코자 하는 준비 차원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6 호
의결년월일	98. 11. 14 (제66회)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95. 12. 6)됨에 따라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 주요골자

- 조례의 관계법령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함(안 제1조, 제7조)
- 수방단의 임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하게 임무 부여(안 제3조)
- 수방단 교육 및 훈련실시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 수방단 소집과 관련한 기록의 보존 근거(안 제8조)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중 “단원”을 “수방단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5항본문·제5항제1호나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가목을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로 한다.

-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나. 주민대피 유도
- 라.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제6조본문중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중 “풍수해대책법 제29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 제8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3년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현 행 >

제 호	동 원 교 육 훈 련	소 집 통 보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소 속		
5) 소 집 기 간		
6) 소 집 장 소		
7) 기타참고사항		
19 년 월 일 부천시 재해대책본부장 (인)		
절 취 선		
제 호	수 령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 대한(동원, 교육, 훈련) 소집통보서를 수령함.		
19 년 월 일 수령인 (인)		

[별지 제1호 서식]

< 개 정 >

제 호	동 원 교 육 훈 련	소 집 통 보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소 속		
5) 소 집 기 간		
6) 소 집 장 소		
7) 기타참고사항		
19 년 월 일 부천시 재해대책본부장 (인)		
절 취 선		
제 호	수 령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에 대한(동원, 교육, 훈련) 소집통보서를 수령함.		
19 년 월 일 수령인 (인)		

[별지 제1호 서식]

< 현 행 >

< 개 정 >

(삭 제)

(시행기관명)

수 신 19
참 조
제 목 수방단 동원결과 보고 발 신 (인)

1) 구 분		동 원 사 항			
		2) 대상인원	3) 동원결과	4) 비율(%)	5) 비 고
누계	6) 계	단/명	단/명		
당일	7) 계				
8) 동원기간		19 년 월 일 () 일간 19 년 월 일			
9) 동원장소					
10) 동원목적					
11) 기 타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천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수방단은 <u>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경보의 전달 2. 방조제, 하천제방, 댐, 제방,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3. 재해위험지구에서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 4. 재해방지 및 구조 5.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6. 방역과 방범 기타질서의 유지 7. 방재의식 계몽 및 전파 8.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p>제4조(조직) ①(생략)</p> <p>②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③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④(생략)</p> <p>⑤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소속하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반에 두는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1조(목적) <u>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u></p> <p>.....</p> <p>제3조(업무) 수방단은 <u>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p>제4조(조직) ①(현행과 같음)</p> <p>②수방단원</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p>③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⑤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u>주민대피의 안내</u></p> <p>다. (생략)</p> <p>라. <u>주민의 통제</u></p> <p>마. ~ 바. (생략)</p> <p>2. (생략)</p> <p>가. <u>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경계</u></p> <p>나. ~ 라. (생략)</p> <p>3. (생략)</p> <p>제6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이에 1회 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제7조(동원절차) <u>풍수해대책법 제29조</u> 규정에 의거 수방단원을 동원할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소집통보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단서생략)</p> <p>제8조(용소결과 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원을 동원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u>용소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해당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주민대피 유도</u></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주민의 집서유지 및 통제</u></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u>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u></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교육 및 훈련) <u>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u> 1. ~ 8. (현행과 같음)</p> <p>제7조(동원절차) <u>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제2항</u> (단서 현행과 같음)</p> <p>제8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시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3년 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